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 12. 13(화)

경 상 북 도 보 건 의 료 인 력 지 원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0
제안일자	2022. 10. 27.
회부일자	2022. 11. 0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경 상 북 도 보 건 의 료 인 력 지 원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원석 의원 외 32명

2. 제안이유

-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2.11.01. ~ 11.07.(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97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 제정취지와 필요성

- 2020년 코로나19 대확산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의 보건의료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업무량 과중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2022년 7월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기관¹⁾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은 3,334명이며, 인구 1만명당 보건의료인력수는 1,265명으로 나타남(붙임자료1 참조).
- 인구당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로 이를 단순계산 할 경우 2020년 기준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1명이 담당 하는 도민의 수는 792명에 달함.
-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핵심인 의사 인력의 경우, 경북의 평균연령이 50.7세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젊은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 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전진료소, 보건의료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약국, 모자보건 센터

- 그러나,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의료인력의 탈진과 현장 이탈 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규정한 것이며,
-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른 조례보다 우선함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최근 코로나 19 이후 보건의료인력 분야에 대한 인력부족과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 등의 확산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력양성의 책임을 규정함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2)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6조3)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함.

- 이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며, 지역의료보건계획에는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의료기술 및 역량 증진 훈련 지원, ▲장기근속 유도 지원 사업,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인력 확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4)와 부합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2)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는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를 규정하여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심의·자문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6조의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 인력 배치, 근무환경개선,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법」 제6조5)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관련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보건의료에 풍부한 지식을 지닌 사람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5)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 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붙임자료2 참조).

- 안 제8조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제3호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지역보건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의 만성적 부족, 노동강도 증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부담 계획이 없는 점은 향후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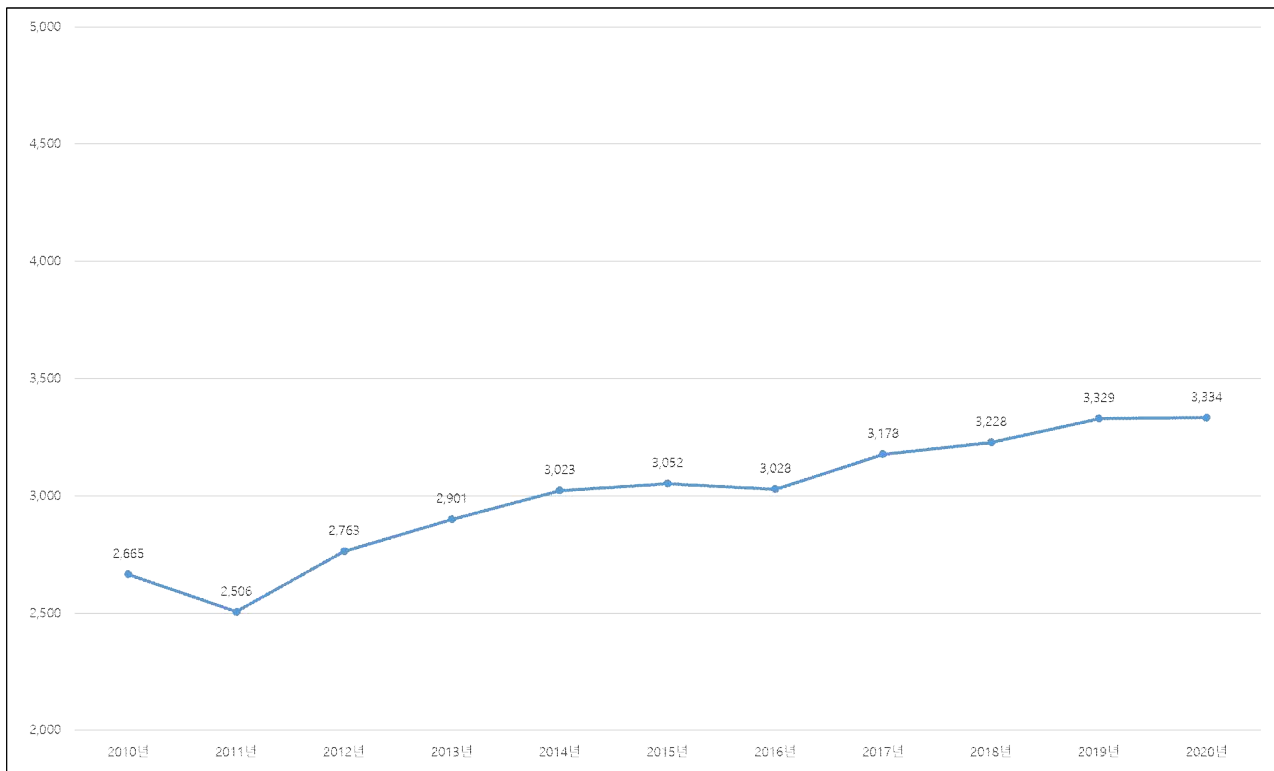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지역	보건의료인력 수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수	보건의료인력 1명당 담당 인구 수
전국	99,492	194	521
서울	29,136	306	332
부산	7,720	229	439
대구	5,550	230	436
인천	4,769	163	617
광주	3,361	233	431
대전	3,541	243	413
울산	1,687	149	673
세종	286	82	1,244
경기	20,083	152	669
강원	2,400	157	642
충북	2,319	146	690
충남	2,899	138	732
전북	3,442	191	524
전남	2,642	143	700
경북	3,334	127	792
경남	5,216	157	640
제주	1,107	166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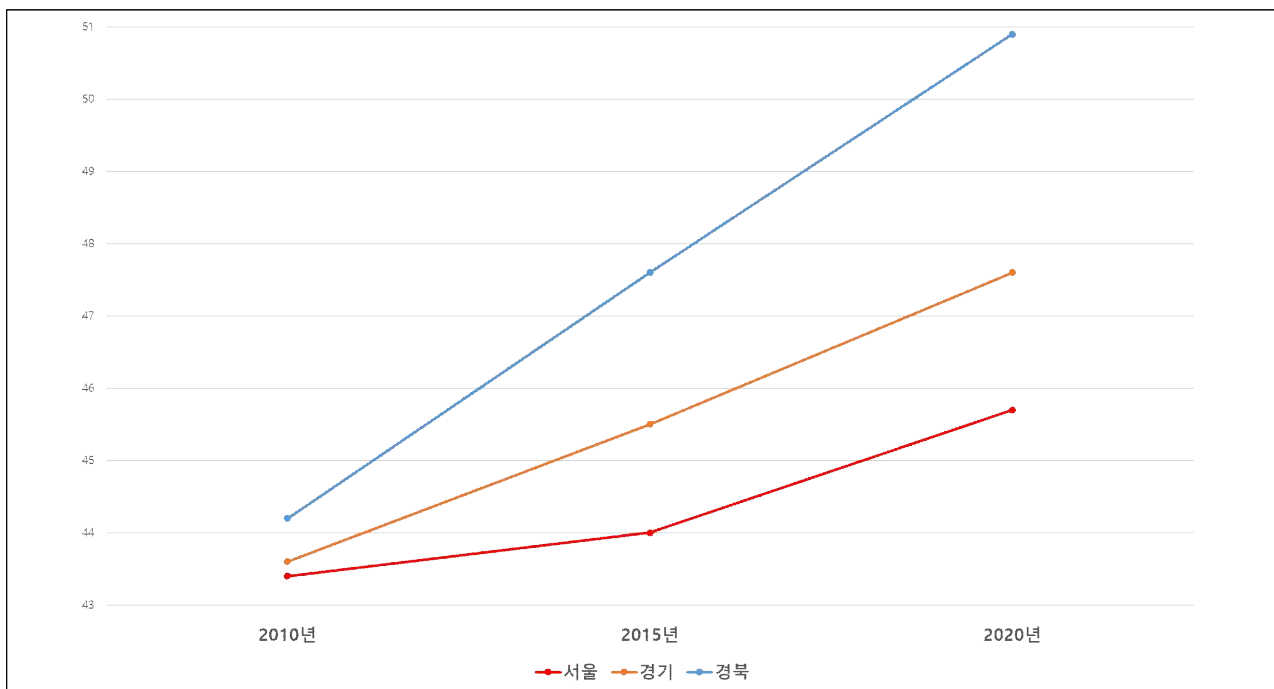
□ 지역별 의사 평균연령 변화 추이

지역	2010	2015	2020	10년 변화값
전국	43.8	45.7	<u>47.9</u>	4.1
서울	43.4	44.0	<u>45.7</u>	2.4
부산	45.4	47.1	49.1	3.7
대구	43.8	45.6	48.0	4.3
인천	44.3	45.7	48.1	3.8
광주	43.9	46.7	48.7	4.8
대전	43.1	45.6	48.1	5.0
울산	44.7	47.3	49.1	4.3
세종	45.2	48.9	47.2	2.1
경기	43.6	45.5	47.6	4.0
강원	42.9	45.7	49.0	6.1
충북	43.4	46.9	49.5	6.1
충남	44.1	47.3	49.7	5.7
전북	43.4	46.6	49.5	6.1
전남	43.7	47.2	50.7	7.0
경북	44.2	47.6	<u>50.9</u>	6.6
경남	44.1	46.2	48.6	4.5
제주	45.3	47.1	49.3	4.0

□ 10년간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확보 추이



□ 10년간 경상북도 의사 평균연령 증가 추이



붙임2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현황

□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근거	○ 지역보건법 제6조 ○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구성일자 (설치구분)	1997. 12. 4 (법령)	
설치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장	성명	김 ○ 홍	직책	행정부지사	
위원수	14명(당연 4, 위촉 10)		위촉내역	남 6, 여 4	임기 3년
회의개최	【2021년도】 • 회의실적 : 1회(서면) • 소요예산 : 800천원 • 회의내용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심의		【2022년도】 • 회의실적 :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22년 시행계획 및 '21년 시행결과 수립 면제		

◇ 위원명단

직 위	성명	성별	사회적직책	위촉여부	비고
위원장	김○홍	남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당연직	
부위원장	박○수	남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	
위원	고○희	여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위촉직	
〃	곽○필	남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박○늬	여	포항외식창업연구소 소장	〃	
〃	김○규	남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이○희	남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과장	〃	
〃	최○아	여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신○분	여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	〃	
〃	이○석	남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	
〃	홍○수	남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황○현	남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	
〃	박○은	남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장	당연직	
〃	신○보	남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	
간사	최○정	여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	